

제4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9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5)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1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1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1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
1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18.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상정된 안건**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2) .....	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	2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	2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	19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	19
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	21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	21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5) .....	23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	23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	2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	29

(13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법안들의 심사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소위 자료 내 조문 자료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문 자료는 이렇게 별도로 조문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자리 앞

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크게 조문별로 해서 구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하시면서 혹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이 큰 종이의 자료를 보시면 각 법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번, 7번, 8번에 관련돼서 기관 이전의 지원이나 관련된 절차나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6번의 해양수산업 육성 부분이 두 번째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어떻게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제명이나 목적, 정의,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에 이 자료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조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중 조승환 의원안은 9월 26일에 소위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 법안들은 공통사항으로 해수부 및 관련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은 부산을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그리고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외에 이전기업을 포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인천과 세종시에서 전국적인 해양산업 고도화 또는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부산’ 또는 ‘해수부’라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조(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법안의 공통사항과 법안마다 개별사항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목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 내용들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해양수산업 기능 고도화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에는 ‘해양산업 또는 해양수산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규정된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조(정의)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정의 규정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산업 집적지를 규정하고 있고 김태선 의원안은 2조에 공공기관 그리고 이전기관, 해양수산기업 그다음에 이전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2조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수산산업,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그리고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그리고 5호에 국제해양특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김태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기관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1호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혁신도시법과 동일하게 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호의 공공기관의 내용을 보시면, 밑의 네모 박스된 부분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분권법의 14호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가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그리고 다에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보다는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의 정의 규정은 법안의 실제 내용을 심사 후에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3조에 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3조에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일단은 김태선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이념과 책무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좀 더 구체화하고 거기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전기관 등’의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구별해서 그 아래부분에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제정안 개별 조문의 지원사항들을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구분하여 제6조 등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규정하는 걸로 일단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책무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심사하신 후에 추가하시거나 이런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3개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은 관계기관 의견과 타 법률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김태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안) 제4조제1항을 보시면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국토부에서 추후 이전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사후관리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됨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에 원래 이전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의 장이 이전의 규모나 범위 등에 관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항에서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김태선 의원안의 이전계획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조 1항 단서에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같고.

그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4항에 이전기관의 장이 수립한 이전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반영해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김태선 의원안의 6조를 기본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내용은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당 자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에서 조금 다른 점은 8페이지 2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약간 분리해서 부산시장이 주도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항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태선 의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전기관이 뒷부분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의 5조부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5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들고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해양수산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괄호에 있는 부분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그 외의 부분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아랫부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제6조의2는 기본계획이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이런 법률 태도를 한번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꼭규택 의원안은 제4조에서 해양산업특화혁신지구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고 2항에서는 혁신지구에 이전대상 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등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양산업에 특화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6조에서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혁신지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곽규택 의원안의 2항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10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의원안들의 내용은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주체, 지정절차, 요건, 내용 등의 조정 또는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규택 의원안의 4조는 지구 조성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승환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뒷부분을 보시면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거나 또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및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관련 법률과 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현재 혁신도시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운영 중이기 때문에 특히 곽규택 의원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또는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같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혁신지구의 기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국제학교는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토부는 지정절차에 관한 곽규택 의원안 제3조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5조는 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집적지에는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7조는 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이 밀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6조는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1항에서 국가는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화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8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고 2항에서 협의체의 기능은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의 8조는 수정의견에 제7조제4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7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승환 의원안은 9조에서 국제해양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의 관할구역 중에 국제해양특구를 지정하고 2항에서는 인프라 등을 구축하도록 하며 3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비고란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2018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총괄하여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9조는 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스타트업 등이 입주되거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고 조세 감면이나 입지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제10조에서는 국제해양특구에 대해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기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재부는 제1항의 각종 지원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삭제, 국유지 무상 사용 표현을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 그리고 시행령으로의 위임 등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조세 감면 지원책 중 취득세·재산세 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제13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8조에서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디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비교란을 보시면 광규택 의원안의 제8조에 대해서는 디지털 해양산업과 핵심 기술의 명확한 의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비교란을 보시면 제7조는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광규택 의원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수정의견 7조에 포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쪽에 있는 수정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한 지역·지구 등을 전제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산시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되게 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집적하고 지원할 수 있다.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이러한 관련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 조항을 두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14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교란을 보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의견(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 설치는 행안부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광규택 의원안은 제11조에서 재정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선 의원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개 안 모두 다 2항에서 이전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교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각 제정안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산업부·기재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여 광규택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의 제2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은 조승환 의원안의 14조를 이동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을 보시면 제12조에서는 1항에서 국가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에서는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1항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용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이주직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주직원과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약정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의견을 반영해서 제6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항을 보시면, 비고란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6항을 신설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이 있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비고란을 보시면 행안부는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나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 9조에 이런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1항에서는 국가가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제11조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을 보시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및 감면은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기 때문에 안 11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10조는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1호에서는 주거 지원 그리고 2호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연계 및 우선 배정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김태선 의원안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수정의견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인 김태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부산시는 출산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31페이지 비고란을 보면 부산시가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를 단일세목으로 운영 중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정의견으로 2항에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0조 제2항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10조 3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의견입니다. 32페이지 오른쪽 비고란을 보면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혁신지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한도를 120%로 조정하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10조제3항에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김태선 의원안 10조는 전·입학 편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김태선 의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과 관련해서 각 의원안들은 부칙이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 자체는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이 필요한 조항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담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의견 5조에서 이전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까지만 현재 돼 있는데 장관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에 따른 절차를 일부 인용을 하는데 그 연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 페이지짜리를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의견 제12조제3항에서 지금 부산광역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호, 2호는 좋고요. 3호, 4호, 5호는 일부 관련 규정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일부 관계기관하고의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세부사항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3호, 4호, 5호를 삭제하고 현재 6호를 3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대통령령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통령령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법안 18개를 심의하기로 돼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같은 취지로 해서 세 분의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사실은 법안을 각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정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항목별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할 게 아니라 조문별로 3개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수정의견에 대한 부분도 맞지 않으면 또 적절성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다 해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에, 지금 4번부터 18번 항목은 사실상 일부개정법률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시고 1번부터 3번까지 조문별로 따져 나가면서 법안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 오늘은 10번까지만 할 예정이거든요,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4번부터 10번까지를 먼저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해서 논의는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법안 심사를 하고 1항부터 3항까지를 할지 아니면 1항부터 3항까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넘어갈지 사실 그 고민이 되거든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제정안의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사실 사이즈가 좀 커졌거든요. 북극항로 추진과 관련해서 해수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고 관련해서 해수부 이전 또 연내 이전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제정돼야 지자체에서 빨 빠르게 해야 될 조치들이 있어서 제정안의 시급성을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과규택 의원님과 조승환 의원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좀 커졌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나 부처에서 어쨌든 해양산업 고도화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비전과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기관 이전도民間 영역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오히려 자연스럽지만 이게 이렇게 법안으로 제출돼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인위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행안부나 산자부 그리고 법무부, 국토부의 의견, 부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보고 또는 해양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이런 입장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설령 시급성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면 우리가 조문별 심사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번 안건부터 10번 안건까지 먼저 하고 후순위로 1호부터 3호 안건까지 다뤘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옥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저도 이렇게 제정법이 규모가 커질 줄 잘 몰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제정법은 오늘 안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큰 제정법을 논의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경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번에서 10번까지 하지만, 11번이 딱 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이네요.

○**소위원장 조경태**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걸렸어요.

○**송옥주 위원** 11번까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2·3번에 대한 제정법을 논의하되, 제 생각에는 곽규택 의원님과 조승환 의원님께서 좋은 제정법안을 내시기는 하셨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연내에 이전하는 이 법안의 부분들에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또 여야 위원님들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취지에 맞춰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도해서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신속한 이전으로 효율적·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123대 국정과제 56번도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제목하에 25년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HMM 부산 유치, 쇄빙선 건조 및 상업 항로화 추진,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및 물류 허브화 추진, 해운 경쟁력 제고 및 K-조선업 도약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해운·항만 외의 다른 분야, 해양수산이나 해양자원, 해양레저관광은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전남 또 해양레저관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해상풍력 등 해양자원 개발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남 지역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은 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을 촉구하면서 인내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된 법안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넘어서 부산을 해양수산수도로 만들고 해양기관과 수산기관, 관련기관, 민간기업들을 모조리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치는 아주 나쁜 법입니다. 부울경끼리는 어느 지역도 서로, 옮기면 이쪽에 갈등 오니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부울경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의 집중 지원, 세제 지원, 제도 지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울경 내 기관 이전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타 지역에서 부산 이전 시 정부의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집중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해양수산 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업체도 부산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양수산업 고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불 보듯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법안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어야 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으로 딱 한정해서 해수부가 하루 속히 부산으로 이전해서 직원들이 비교적 불편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이것만 지원하면 되지 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해양수산기관을 이전하고 지원하고 진통하고 이런 것을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빌미로 해서 해운·항만을 넘어서 해양수산 전 분야를 부산으로 몰려는 책동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을 비롯한 타 지역 해양수산인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염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의에서 약속한 부산 중심 북극항로 시대 개척을 약용해서 전국의 해양수산 모든 분야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려는 나쁜 책동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주철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수부 이전이지요, 해수부 이전에 플러스 해양수산기관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더 들어가서 이전기업까지 이 법에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은 농해수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이 법을 보면 되게 재밌게, 내가 찾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부 이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주 재밌지요? 정의,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2조 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전기관이란 1호 부분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이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이 들어가 있군요. 이것은 제가 착각했네요. 공운법만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업을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은 전연 아닙니다. 전연 아닌데 해양수산부가 이전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마중물적인 법안의 역할은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하고 곽규택 의원하고 이렇게 발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종 신도시를 만들고 나주나 진주에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 법의 포맷이 혁신도시법입니다. 빈 땅 위에 죽 그려 놓고 거기에 공공기관 넣으면서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혁신도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법이 부산에서는, 특히 대도시—꼭 부산에 한정시키지는 않겠습니다—에서는 좀 적용되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고요.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법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느냐? 혁신도시법 자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논밭에 선 그어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법이었다 그런다면 이것은 기존 도시에 어떻게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지구 지정이나 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이나 이런 것 하기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법 자체가 이미 시대의 흐름이 한번 지나간 법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온갖 규제와 국토교통부와 지방화 뛰 위원회, 심의기관들을 겹겹이 거치도록 해 놓고 있는 이 혁신도시법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려고 그런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돼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얼마든지 좋은데, 국제해양특구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넣었습니다. 넣었지마는 사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돼서 들어갈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철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해 가서 과거에 혁신도시법 가지고 도시 죽 그어 가지고서 아파트 짓고 생활근린시설 짓고 거기에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혁신도시법에서는 빼고.

그래서 제일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도 의미가 없고 우선공급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여기 다른 지역들도 많겠습니다마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공급이 그게 없고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직주근접에서 아주 떨어진 부산 외곽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걸 혁신지구에 넣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법을 준용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줄여 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수부 그다음에 이전기관, 이전기관 중에는 공공기관이 있고 공공기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 이걸 지금 포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부분은 이전기관까지 줄 거냐, 해수부 직원한테까지만 줄 거냐.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30% 지역에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을 30% 뽑는다 그런다면 절대 안 되지요, 중앙부처 공무원인데.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적용범위에 대한, 그리고 이전기업에서, 민간기업에서 회사 결정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직원들한테 이주비 주고. 일반, 예를 들어서 HMM 직원들한테 이주비 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법에서 차별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래 전입직원들이나 신입직원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뽑아 가지고 부처를 배치하는데 중앙부처가 서울하고 세종에 다 있는데 중앙부처 하나가 부산에 떨어져 나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부산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 채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신입직원들이나 미래의 전입직원들에 대한 혜택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이나 기관 다 갖고 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부산이 아니고 제 지역구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게 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클러스터는 유휴항만에 대해서, 특히 부산하고 광양의 유휴항만에 두 군데인가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항만과 관련된 유휴부지를 어떻게 집적화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법률인 것이지 이 법률하고의 정합성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해양수산업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조문에 가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저도 주철현 위원님의 의견에 200% 동의를 합니다.

해운·항만에 관한 부산 일극주의의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지금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법정 단체의 3분의 1이 다 부산에 몰려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해양수산부라는 중앙기관 이전에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지금 이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견이 없는 이전에 관한 것만 우리가 논의해서 다루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이병진 위원님,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할 때 부산은 해양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이 된 것이지, 다른 기관하고 좀 특화되어 가지고 온 부분이 있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병진 위원 해운·항만 관련기관이 지금도 많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조경태 맞습니다. 그게 공공기관 이전할 때……

○이병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지역구 앞에도 바다가 있고 송옥주 위원님 지역구 앞에도 바다가 있고 문대림 위원님 지역구 앞에도 바다가 있고……

○소위원장 조경태 이병진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위원장 조경태 노무현 대통령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한 부분이 마치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병진 위원 저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기타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해양수산부 이전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해 주셨듯이 대선공약이고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내 이전한다는 준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원, 또 직원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가서 근무를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에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또 지방정부인 부산시의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위법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 이전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행정 행위 또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기왕 말씀을, 다른 지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국정과제가 56번 K-해양강국 건설도 있지만……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까지 통과되어야지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최대한 조속하게 이게 통과가 되어야 부산시에서, 또 부산시의 조례 제정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이 조금 엇갈리는 주장들을 하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빼고 비쟁점 부분만 먼저 통과했으면 좋겠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되는 조항만 하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내용은 많이 말씀 주셨는데 비쟁점적인 그런 내용들만 담아 내면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때요?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 해수부만 이전해서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100% 동의합니다.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기관 전 분야에 대해서 관련 기업도, 민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주철현 위원 법을 고치세요,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 특별법으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저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아니,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문대림 위원 주철현 위원님, 위원장님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제 이야기가 주 위원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뭐를 이렇게 벌이고 그래요, 급하다면서.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니까 서로 조금은 존중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저는 여야가 정쟁화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처럼 양쪽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 보시고.

다만 해양수산부 직원분들의 처우 문제 또 아까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상위법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성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이것을 여당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님이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이분 법안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 의원의 주장에 의해서 나온 법안이다. 이것도 상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원회의 몇 분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이 법안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수부 직원분들 또 해수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었으면 좋겠고……

이게 추석 지나고 해도 안 늦습니까? 괜찮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혹시 추석 지나고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를 한 번 더 잡아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그것까지는……

**○조승환 위원** 중간 중간에 비는 날 있으니까 잡아도 되지요.

**○송옥주 위원** 아니, 이것 문제 되는 것 다 털고 나면 오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승환 위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혁신지구 같은 이런 상관이 없는데 사실……

**○송옥주 위원** 철회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혁신지구?

**○조승환 위원** 그건 해양특구 철회하겠다는 거고.

**○문대림 위원** 국제해양특구, 테스트베드, 실증 거점, 인프라 구축, 특별회계…… 어쨌든 이것을 다 법안에 담아 놓고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면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전과 관련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 부산시만을 위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으로 충분히 인식될 것이고 법안 내용도……

**○조승환 위원** 그 내용을 보셔야지요.

문 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국제해양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드롭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는 뭐냐 그러면 지금 해수부 공무원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전제를 깔았던 게 뭐냐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이것까지 단계를 다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것을……

**○송옥주 위원** 차관님, 이것을 부산에서 조례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해서 연내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소위하고 전체회의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타임 테이블이.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께서 쭉 한 번 더 하시라고, 훑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쭉 눈으로 보시면서 아,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목요일입니다. 이날 이 법안만 가지고 원 포인트로 심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때까지 차관님,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 찾아다니시고 또한 주철현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 있잖아요. 여당 위원님들, 법안소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의견을 구해서 16일 날은 조금 속도감 있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저희들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 한번……

○**소위원장 조경태** 조 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면 위원장님 일정 바쁘시고 하시니까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쭉 법안 내용 다 봤는데 전문위원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사실 아까 저도 분명히 국제해양특구는 빼겠다라고 하는 게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저는 사실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공운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해수부의 국가직공무원이 옮겨 오는 부분들, 이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대로 부산에 정착해서 부산에서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수부가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하는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법안심사에 충분히 임할 의사가 있습니다. 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어디까지, 이주비 주고 하는 것까지 지원이냐 아니면 집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 직원들이나 전입직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조승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자이기는 하지만 주철현 위원님과 충분히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관님, 그래서 16일 날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하기 전에 차관님하고 두 분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차관님이 바쁘시면 실장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법안이 조금 숙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10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 포인트로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사이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들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무리하게 한 이유,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한 이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해서 한 번쯤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한 번 더 하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6일 날 해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마음은 급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사이에 위원님들 설명 올리고 16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혹시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여서 스터디 한번 하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병진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요?

○**문대림 위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전달하셔 가지고, 그날 안 오고 나중에 와서 또 땀소리하면 그건 무

시해도 되겠지요?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렇게 해서 16일 날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서천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16일 날로 일정이 지정된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곳이 있고 또 관련 중앙부처 입장이 다른 곳이 있고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스터디를 한다고 하지만 16일 날 최종 심의할 때는 여기에 이견을 제시한 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서는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만 되면 지자체 문제는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0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원 포인트로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14시06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김선교 의원, 서천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두꺼운 자료입니다.

3페이지 왼쪽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 해산 사유 중에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을 현행 15인 미만에서 10인(김선교 의원안) 또는 7인(서천호 의원안) 미만으로 완화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구별수협 관련 최소 조합원 수 규정의 오기를 실제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회원이 많은 업종별수협 일부가 조합원 수 미달로 해산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19번의 대형선망 같은 경우에 업종별조합이고 조합원은 16인인데 법인 수가 13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3인인데 이러한 조합들이 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해산을 방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준용 규정 오기 수정 내용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최소 인원에 관해서는 지금 10인 안과 7인 안이 있습니다만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7인 안—서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7인으로 하면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글쎄 이게, 10명도 없는 조합이 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것을 조합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농협을 보게 되면 지역조합은 1000명,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협은 지구별수협은 100명, 인가 기준은 200명 이상이네요.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자격자 과반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10명도 안 되는 이런 조합이 과연 조합으로서 효용성이 있는 건지, 몇 사람이 모여서 조합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수산업법 관련해서 면허 받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이 수협조합법을 보게 되면 인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놓고 해산 사유만 법조문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법 체계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외국은 어떤지……

외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은 조합도 외국에 있습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주철현 위원** 외국에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조합도 있어요? 나는 들어 본 일이 없어서. 차라리 영어조합법인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하지 뭐 이 조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 안 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조합원 수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업종에서 생산하는 어업의 생산량이라든지 어선원 고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예시가 되고 있는 대형선망은 하나의 선단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6척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해서 조업을 하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6척 이상의 선단을 꾸리고 있고 거기서 1년에 어획고가 100억이 넘는 그런 법인들이 다수가 있는 것처럼 규모가 있는 수협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7인 이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을 협회 같은 것을 만들면 되지 굳이 조합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형 큰 기업들 같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조합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특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 각종 사업 지원을 하는데 현재 수협 차원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경제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

서…… 이게 아시다시피 원래 숫자가 많지 않은 조합인데 저희들 어획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간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선단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의 정합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현 위원 대형선망이 지금 유일한 사유인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정부의 입장 좀 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 위원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14시12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윤준병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 또는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운데 보시면 윤준병 의원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희용 의원안은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문대림 위원과 사회교대)

이러한 규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외국의 사례—외국의 사례는 12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과태료 수준 및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어업인의 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도입 범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선실에서 착용했을 때 위험성이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외국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정희용 의원님 안처럼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하고 과태료 수준도 어업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관계부처 의견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구명조끼 상시 의무 착용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협도 구명조끼 상시 의무 착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나 지자체 및 일부 수협, 노조 등에서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 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전면 도입에 대한 제도 준비 시기 등을 고려해서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의무화를 하는 계기에 조금은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과태료를 조금만 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1000만 원은 좀……

이게 1건당입니까? 1인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당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건당입니다.

○**조승환 위원** 건당이니까 그 안에 있는 어선원들 예닐곱 명 중에 3명 안 입었으면 1명당 별금 매기는 게 아니라 1건당으로 그냥 매기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닙니다. 개인당……

○**조승환 위원** 개인당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조승환 위원** 사람당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냥 300만 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별도의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조승환 위원** 예.

○**전문위원 김성완**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정희용 의원 개정안은 출입항 신고 업무를 위한 외국인 어선원 관련 자료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선원 정보 등록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선원 관리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보시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를 아래 수정의견처럼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선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신고소가 신고기관의 정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으로는, 중요한 의견으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입항 신고기관에서 민간 대행신고소를 제외하고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5)

##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14시18분)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첫 번째 내용은 양식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강요행위 적발 시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양식업자의 근로강요행위를 근절하고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랫부분을 보시면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현재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으로는 수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특별 조항을 두는 것은 어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로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각 지역조합의 의견들은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정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구실명제는 2023년부터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 시 처벌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실명제에 대한 별칙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의 법의 침해 정도 그리고 어구실명제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제도, 계속 말씀드린 어구실명제와의 형평 및 법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별칙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제일 아래쪽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제도의 홍보 및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안 중 불법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양식업 종류별 면허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중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행정대집행 절차보다 단속기간을 단축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제도로서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2026년 4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이러한 위반 시설물 철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요건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56조의3제1항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면허양식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허가양식업자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네모 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추가하여 행정대집행 집행자들이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제58조의2,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의 표를 보시면 각 법률에서는 다양한 명예감시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공정한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감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상을 유통질서 또는 검역·방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양식업 질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수정의견을 보시면 양식장의 관리와 불법행위라는 그런 쪽으로 수정하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시·지도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사실상 양식업에 대한 거라서 사유재산과 관련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감시라는 부분보다는 지도·계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양식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강요행위 적발 시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도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두 번째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26페이지 세 번째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29페이지 네 번째 양식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차관님, 일반 어선어업 같은 데에 이렇게 근로강요 하게 되면 어선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유는 없잖아요. 유독 소금산업하고 양식산업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문제되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어쨌든 양식장에서 국내 근로자도 그렇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강요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근로강요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이러한 근로강요행위를 균절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정벌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철현 위원**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근로를 강제하게 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고 그

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에 관해서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일반 어선어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똑같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양식보다는 어선어업이 훨씬 더 근로자들의 여건이 열악하기도 하고 훨씬 더 강한 지배 종속력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어선어업하고 양식업하고 차등을 두는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염전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인권 문제가 제기가 돼서 미국에서 그것을 또 무역 제재의 하나의 요인으로 삼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어선어업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또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면허나 허가 낼 때…… 이것 없애려면 정부에서 보상금 주고 없애고 있는데 텔령 그걸 했다고 해서 이걸 취소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인데. 그래서 그래요. 이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과도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런 건데 어선어업과 다르게 양식산업만 특별히 차등을 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조승환 위원님 말씀……

○**조승환 위원** 차관님, 양식업과 관련돼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강요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최근에 김 양식장에서 근로자 인권 문제 가지고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근로강요행위, 아까 주철현 위원님 어선어업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인허가가 나가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다 같이 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양식하는 어민들 전체를 무슨 근로를 강요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것 같은데 다른 방법……

김 양식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염전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 우리가 자체부자유자이신 분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악덕 염전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회 이슈화돼 가지고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염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이 땅에도 있을 수 있고 바다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땅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이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좀 심한 처벌이, 과도한 처벌이 돼 버린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의 그런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가야지 인허가를 다 취소하고 투입된 지원금까지 다 회수한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식어민들을 좀 범죄집단화하는 이런 느낌을 줘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이지만 저는 상당히 좀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법인데, 이게 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염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처벌도 하고 그래서 소금산업 진흥법에는 똑같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근로강요행위로 적발이 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반영이 돼서 그것을,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수·고흥 지역의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적발된 사례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특정 한두 양식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양식장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양식어업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해당 양식장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걱정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한두 양식장 때문에 전체 양식장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벌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소위원회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조승환 위원** 근로강요행위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로강요행위라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진짜 채찍 들고서 일을 시키는 근로강요행위로 시작해서 지금 얼핏 부적정 숙소 제공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약간 그런 것까지도 근로강요행위가 되는 것 같으면 근로강요행위를 가지고서…… 이게 형별이잖아요,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22페이지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용어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이 워딩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는……

○**조승환 위원** 그 워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그 숙소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도 어떻게 보면 감금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벌도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땐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대명천지에 이렇게 근로강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면허 취소 사유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타깝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구체적 사

례가 없잖아요.

○**조승환 위원** 대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김 양식장, 김 수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게 행정편의적 으로 인허가 취소, 지원금 박탈 이런 행태로 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은 의결 보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승환 위원** 뒤에 동의하는 것은 의결이 아니라 일단 찬성하는 걸로 정리하고 이것만 남겨 놓고 가지요.

○**주철현 위원** 그 부분만 빼고 그냥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에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14시35분)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보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 경과 시 재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오른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해양오염관리인을 임명·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면 임명한 해양오염관리인을 그대로 보유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가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5항을 신설하여 ‘선박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원쪽 개정안입니다.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된 조사지침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정의견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용 조항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밑의 수정의견처럼 인용 조항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문대림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요.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4시38분)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49페이지입니다.

왼쪽입니다.

개정안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개정되면서 국제해사기구가 동 협약에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기록부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협약의 개정에 따라 법을 정비하고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입니다.

전자기록부 사용 시에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비치·기록·보존 및 제시 의무가 준수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표의 네모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 1항 등은 전자기록부 검사 대행, 수수료,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전자기록부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시 수수료 부과 및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현재 대행기관에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등을 대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또한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와 유사한 의무 위반이므로 이에 준해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송옥주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대림** 위원님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약속한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이후 법안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이병진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권순우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